

제 호

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2. 소재지:
3. 대표자 성명:
4. 교육훈련 분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